

미국 압박에 베트남이 움직였다 "지식재산권 단속 강화"

[오피니언: 베트남 통관]

OEM·부품·포장재·라벨까지 지재권 리스크 (17p)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예전엔 통과됐는데" AI가 잡아내는 라벨 오류에
미 FDA 통관거부 60% 급증 (12p)

[이주의 초점]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허용,
지식서비스업도 입주 가능 (4p)

[위클리 뉴스]

무역위,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최대 31.55%'
반덤핑관세 부과
오는 8월 해외 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가동 예정
식약처·법제처, 해외 식품 규제·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7p)

[관세행정]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2p)

[품목분류 동향]

"미용기기일까? 아니면 의료기기일까?"
MTS 머신의 품목분류 쟁점 (30p)



※ AI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5월 25일(통권 제2180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지식서비스업 입주 가능

07 Weekly News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 12** “예전엔 통과됐는데” 시가 잡아내는 라벨 오류에
미 FDA 통관거부 60% 급증

오피니언

- 17** 시선, 베트남 통관
이여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베트남 지식재산권 통관 강화 '부품·라벨'로 확대

관세행정실무해설

- 22** 관세행정안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8** 질의응답사례
냉동 주꾸미의 수입요건

품목분류동향

- 30** 품목분류해설
피부관리 시술에 사용되는
MTS 머신의 품목분류
-2026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39** 세번 바로잡기
실리카 마이크로스피어의 HS Code
-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지식서비스업 입주 가능

국·공유지 분양 허용해 투자 활성화… 입주 자격·특례도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자유무역지역이 디지털·지식서비스 산업까지 포괄하는 첨단 수출거점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특히 국·공유지 분양 절차를 구체화해 기업의 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기업의 입주 문턱을 낮춘 점이 핵심 변화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성격이 강하다. 자유무역지역을 제조·물류 중심 공간에서 디지털과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자유무역지역은 총 14곳(면적 기준 약 36.05㎢ 규모) 지정됐으며, 현재 조성 추진 중인 디지털마산을 제외한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국내·외국인투자(외투)기업 1,510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율은 92.3%다. 자유무역지역은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는 관세영역 외 지역으로 인정돼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공시지가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임대 중심 운영 방식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설비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공유지 분양 허용… 기업 투자 확대 기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지 분양의 세부방안을 마련한 점이다. 기존 법령에도 분양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19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이후 임대 중심 운영이 50여 년간 유지돼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신규 투자에도 제약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유지와 공장 매각 가격 산정 기준, 매각 대상,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감정평가 가격 2개의 평균으로 산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기업체만 매각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주 자격을 갖춘 제3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의 자산 활용성과 투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처분 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산업 활동 중심의 입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 R&D 등 지식서비스 기업 입주 허용하고 관세 특례 확대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에 따라 정보처리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기업에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업은 입주기업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 비중을 충족할 경우 입주가 가능해진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준건축면적을 예외도 허용된다. 기준건축면적률은 사업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을 의미하는데, 기존 제조업 중심 기준은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지 않은 DX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입주 비용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기업 유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DX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문화된다. 자유무역지역이 생산거점을 넘어 디지털 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종제품 가격 기준으로 내국원재료 가격을 공제한 후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과세’ 방식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원재료의 세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원료과세’ 방식도 도입된다.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에는 물품 통관 단계에서만 적용되던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확대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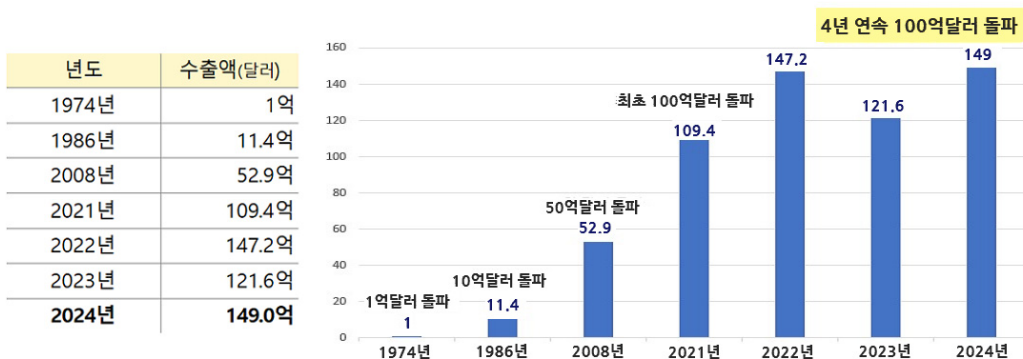
	현행법	개정법
매 각 규 정 보 안	분양 대상 ◦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해 입주기업체 등에 매각 가능	◦ 입주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확대
	분양 가격 ◦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	◦ 매각가격은 투기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법」 준용 (감정평가 가격 2개 평균)
	수분양 기업 의무 ◦ 공장설립완료신고/사업개시 신고 전 처분 시 관리권자에게 양도 ◦ 입주계약 체결/해지 규정 없음	◦ 토지취득자에게 입주계약 체결의무 부여 ◦ 토지 취득 시 처분제한기간(10년 이내) 신설 ◦ 관리권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 과징금 도입 ◦ 초기 투자 유도를 위해 토지취득자 기부제도 도입
입주기업 관리	◦ 입주자격 상실, 입주계약 외 사업 등의 경우 계약 해지 ◦ 국공유지 수분양자의 양도·임대 상대방은 입주 자격 있음. ◦ 임차한 토지 위 공장에 대해서만 임대 시 관리 권자에게 신고	◦ 불성실사업 수행 등 입주계약 해지 사유 강화 * 1년 이상 공장 건설 미착수, 1년 이상 휴업 등 ◦ 모든 토지취득자는 양도·임대 시 상대방을 입주 자격 있는 자로 한정 ◦ 취득한 토지의 임대·매매 시 관리권자에게 사전 신고

	현행법	개정법
DX기업 입주요건 완화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업종은 입주 기업으로 입주 불가	-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권자의 보고·검사권 신설 등 - 정보처리업 등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 업종도 수출비중 충족 시 입주기업으로 입주 허용 - 기준건축면적률 예외 등 입주 초기 비용 완화 - DX기업 입주 촉진을 위해 국가의 DX 자원 명문화 등
입주기업 지원 강화	- 제품과세*만 허용 * 최종제품 가격에서 내국원재료 가격을 공제한 후 관세 부과	- 기업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료과세* 도입 * 최종제품에 사용된 외국인재료의 세율과 가격으로 관세 부과 - 통관뿐 아니라 관세 부과에 있어 「관세법」 유리한 규정 적용

출처: 산업통상부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해당 법률을 2027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자유무역지역의 역할을 기존 제조·물류 중심 구조에서 첨단산업 및 디지털 수출 플랫폼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산업 경쟁 심화 속에서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산업 투자와 서비스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1974~2024년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액 추이 ●



출처: 산업통상부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은 2023년 대비 22.5% 증가한 149억달러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고성능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수출은 127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85.2%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8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최대 31.55% 반덤핑관세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 Polyvinyl Chloride Paste Resin)에 대해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판정했다. 아울러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새롭게 개시했다.

무역위는 5월 21일 열린 제473차 본회의에서 유럽 4개국산 PSR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심의하고,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관세율은 독일산에 30.60~31.55%, 프랑스산 31.55%,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PSR은 염화비닐 모노머(VCM)를 중합해 만든 미세분말 형태의 수지(Resin)로, 벽지·바닥재 등 건축내장재와 소파·신발 같은 생활용품, 타포린·장갑 등 산업소재에 폭넓게 사용된다. 품목 분류는 HSK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며,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6.5%, 한·EU 및 한·EFTA FTA 협정세율은 0%다. 현재 해당 제품에는 지난 2월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 PVC 페이스트 수지의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독일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31.55%
	그 밖의 공급자	30.60%
프랑스	캠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31.55%
	그 밖의 공급자	31.55%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25.79%
	그 밖의 공급자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28.15%
	그 밖의 공급자	28.15%

* 현재 25.79~42.8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2026.2.25.~2026.6.24.)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조사대상은 철·탄소강·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을 압연·단조해 만든 봉강으로, 자동차·건설중장비·조선·베어링·산업기계 부품 등에 사용된다.

한편 무역위는 국내 기업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은 특허 무효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판결 확정 시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 김성은 기자 |

오는 8월 해외 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가동

관세청이 5월 20일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에서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8월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플랫폼은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환급 신청까지 해외 직구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직구 물량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히 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하고,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캐나다산 원유의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3,300만배럴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약 816만배럴의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자 관세청은 반도체·로봇·수소·태양광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물류·통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반도체 수출의 핵심 거점인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을 신설해 인프라 구축부터 최종 수출 단계까지 기업의 전 물류 과정을 지원한다. 새만금 지역에는 제조·가공·보관·물류 기능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기업 물류비 절감과 첨단산업 투자 유치가 목적이다.

국경 범죄 대응 역량도 높인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등 강력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테이저건 등 물리력 대응 장비를 도입했다. 관세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하고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내역 통보제도’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DB 전격 공개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공개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DB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신청한 원산지 사전심사 사례와 미국의 실제 조사 사례, 품명 검색 기능이 포함됐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품목관세나 덤핑방지관세 등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미국 자체의 원산지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종 생산해도 제3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어 세율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국내에서 가공·포장한 오징어젓갈은 미국에서 중국산으로 판정돼 한국산(10%)보다 높은 3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됐기 때문이다.

● 오징어젓갈 제조공정과 원산지에 따른 세율 비교 ●

재료	공정(한국)	완제품
		
(중국산) 염장오징어, 고춧가루, 마늘 등 (인도산) 참깨	1. 자체 양념 개발 2. 오징어에 양념 버무리기 3. 포장	한국산vs.중국산
부과세율	한국산	중국산
기본세율	0%	0%
임시 글로벌관세	10%	10%
무역법 301조	×	25%
총세율	10%	35%

원산지정보원과 함께 구축한 해당 DB는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매일 최신 사례를 반영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서준식 기자 |

식약처·법제처, 해외 식품 규제·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정부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국가별 식품안전 규제와 해외 법령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5월 20일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화장품 분야에 한정됐던 양 기관의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분산돼 있던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현지 규격과 통관 요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인증 및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가 상호 연계된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현재 58개국의 해외 법령 원문과 번역본 약 3만건을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025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을 운영하며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 기준과 통관 정보를 제공해왔다. 현재 미국·중국·일본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라면, 김치, 음료, 과자 등 30개 품목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서준식 기자 |

●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 내용 ●

대상국가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대상품목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일주스, 커피 엑기스, 김치, 만두(속을 채운 파스타), 인삼 음료, 찌거나 삶은 쌀, 고추장, 홍삼음료, 홍삼포, 홍삼정,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건면), 냉면, 원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제공 내용	품목별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절차 및 준비서류 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 국제물류비 완화 나선다...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국제 물류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참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중기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체국 국제 물류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5월 20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예정인 중소기업 가운데, 전년도 수출 실적이 1만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우체국 자체 사전 요금 할인과

중기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동시에 받는다. 구체적으로 EMS와 EMS 프리미엄(EMSP) 이용 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최대 40%의 사전 할인을 받고, 중기부를 통해 할인 전 정상가 기준 30%를 별도로 추가 지원받아 최대 7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500개사 내외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우체국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선정시 별도의 지원금 신청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참여 기업의 월별 이용 실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통보하면,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은 6월 5일까지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준식 기자 |

중국 해관총서, 6월 1일부터 식품접촉제품도 수입 시 무작위 검사

중국의 관세청, 해관총서가 '2026년도 법정 검사 외 수출입 상품 추출검사 실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57호)'를 발표하고, 특정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해관총서 공고 제150호(2025년 법정 검사 외 수출입 물품 추출검사)'는 폐지된다.

해관총서의 공고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수입품 검사 대상에는 유아용품, 식품접촉 제품, 생활용품, 성인용 신발, 전자제품, 저압 전기기기 등이 포함됐다. 수출품의 경우 유아용품과 저압 전기기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수입품 검사 대상에 식품접촉제품이 포함되면서 식품 포장재·주방용품·용기류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5월 18일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는 중국 당국이 안전·위생·환경보호와 관련된 품목이나 소비자 불만, 반품 사례가 많은 제품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통관·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지부에 따르면, 품질 사고 이력이 있거나 신규 기술 기준이 적용된 상품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고에는 수입·수출 상품별 샘플 추출 장소도 구체화됐다. 수입품은 양하항·도착지·수하인 또는 사용자 소재지에서 샘플을 채취하며, 수출품은 제조공장·물류허브·선적항 등에서 추출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기술 처리와 재검사를 거쳐야 하며, 재검사 후에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출 불허나 반송·폐기 조치 될 수 있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샘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탄소배출 기준, 강제노동 검증 등 관세보다 더 복잡한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연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수출 리스크를 짚어본다. 이번 호에는 AI 시대 미 FDA 규제 흐름과 한국 기업의 과제를 살펴본다.

“예전엔 통과됐는데” AI가 잡아내는 라벨 오류에 미 FDA 통관거부 60% 급증

AI 심사·불시점검 확대... 아마존 라벨 믿었다가 수출 차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수입통관거부(Import Refusal) 건수가 급증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통관거부 증가는 단순한 보호무역 강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심사체계와 중앙집중형 감시시스템 구축 등 미국의 디지털 규제 전환이 본격화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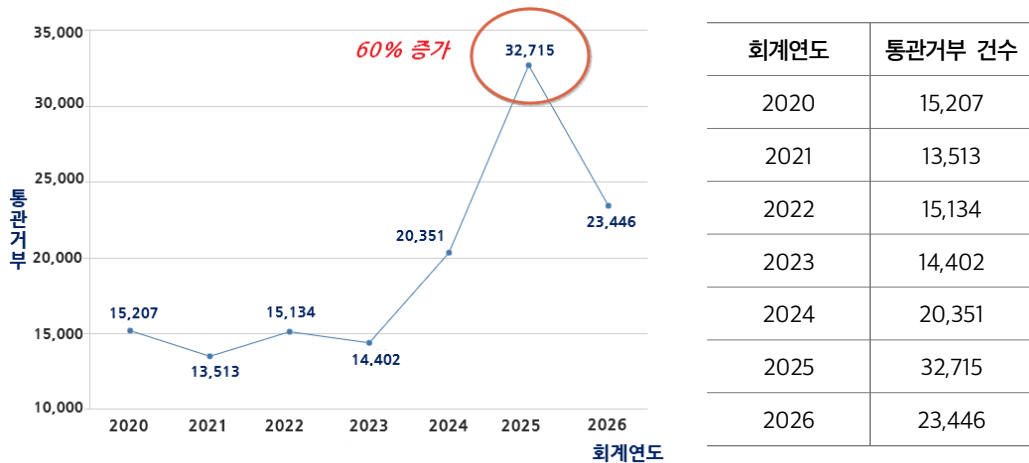


출처: AI 생성 이미지

FDA 통관거부 건수는 2025년 3만 2,7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60.8% 증가한 수치다. 2020~2024년 평균 통관거부 건수가 약 1만 5,000건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2026년 현재도 통관거부 건수는 약 2만 3,446건(5.19. 기준)으로 이미 과거 5개년 평균치를 상회한 상태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는 이에 대해 FDA가 식품안전과 데이터 기반 위험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기존처럼 관세율을 높이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정밀하게 적발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FDA 통관거부 건수 추이(2020~2026년) ●



출처: FDA Data Dashboard(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FDA, 생성형 AI 'Elsa' 도입 "예전엔 통과되던 오류도 적발"

FDA 통관거부가 늘어난 핵심 배경 중 하나로는 생성형 AI 시스템 'Elsa'의 전면 도입이 꼽힌다. FDA는 2025년 6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Elsa를 기관 전반에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FDA는 Elsa를 통해 ▲임상 프로토콜 검토, ▲과학적 평가 시간 단축, ▲고위험 검사 대상 식별, ▲라벨 비교, ▲비임상 데이터베이스 코드 생성 등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FDA 검사 수행기관 아틀라스 컴플라이언스(Atlas Compliance)에 따르면 Elsa는 승인된 라벨과 실제 제품 간 성분 표기 차이를 자동 대조해 미세한 불일치까지 식별할 수 있다.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놓칠 수 있는 수준의 영문 표기 오류나 성분명 차이도 AI가 자동으로 탐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없이 통관되던 제품들도 최근 들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규정 자체가 갑자기 강화됐다고보다, 검사 정밀도와 적발 효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식품 라벨링 제도는 FDA가 제정한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101 Food Labeling’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FDA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전통지 및 수입신고 정보를 토대로 수입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규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식품안전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샘플검사·라벨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라벨검사에서는 ▲식품 라벨 정보와 실제 제품 일치 여부, ▲제품명·원산지 등 필수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현장검사에서는 운송·보관 중 손상 여부, 보관온도, 설치류·곤충 침입 여부, 식품첨가물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샘플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

aT에서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 ‘2025 농식품 수출국가조사-미국편’에 따르면, FDA 규정상 제품명은 단순 브랜드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의 일반명칭(Statement of Identity)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자칩 제품이라면 브랜드명 외에도 ‘Potato Chips’ 또는 ‘Snack’ 등의 일반명칭을 제품 전면에 표시해야 한다.

순중량 표기 방식 역시 국내와 차이가 있다. 미국은 oz(온스), lb(파운드) 등 영미식 단위를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g(그램)·kg(킬로그램) 등 국제단위는 병행 표기만 허용된다. 고형식품의 경우 ‘Net Weight’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기준의 경우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콩, ▲참깨 등을 주요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 포함 시 ‘Contains’를 대문자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생선·갑각류·견과류는 단순 표기가 아니라 정확한 종(種)까지 기재해야 한다.

aT는 국내 기준에 맞춰 제작한 라벨을 그대로 미국 수출용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부 규정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 현장에서는 한국 식품기업들이 국내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라벨이 미국 FDA 기준에서는 위반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낵류 제품에서 ‘Snack’이나 ‘Chips’와 같은 일반명칭을 표기하지 않고 브랜드명만 기재한 사례, 중량을 ‘g’만 표시하고 미국식 표준 단위인 ‘oz’를 병기하지 않은 사례 등이 주요 적발 사례로 거론된다. 또 참깨를 포함한 미국 9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누락, 복합원료의 세부 구성성분 미표기, 영문 라벨 누락, 제조업체 주소 미표기 등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유형으로 지목됐다.

화장품의 경우 패키지에 ‘탈모 방지’, ‘모발 증진’ 같은 기능성 문구를 기재하면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OTC)으로 분류돼 더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인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FDA 기준으로는 의약외품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농식품수출정보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2025년 1~3분기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에 따르면 대미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206건으로, 이 중 라벨링·포장 문제가 11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43건 대비 약 174% 증가한 수치다. 위생 문제 역시 20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기타 농산물과 음료의 통관거부가 두드러졌다. 기타 농산물은 총 57건 중 49건이 위생 문제였고, 음료는 41건이 라벨링·포장 문제로 통관거부됐다. 기타 조제농산물 역시 33건 중

24건이 라벨링 문제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3분기 기타 농산물 통관거부 급증은 팡이버섯 관련 사례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해외 제조시설도 '불시점검' 대상, FISP 도입으로 미국 전 항구 '실시간 감시체계'

FDA의 해외 제조시설 불시점검 확대 역시 전반적인 통관거부 건수를 늘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FDA는 지난해 5월 6일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불시점검(Unannounced Inspection)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등 FDA 규제 품목 전반이다.

그동안 FDA는 미국 내 제조시설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해외 제조시설에는 사전 통보 후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치로 해외 제조업체 역시 미국 기업과 동일 수준의 규제 감독을 받게 됐다.

FDA는 당시 보도자료에 점검 거부·지연·자료 은폐 시 통관거부, 수입경보(Import Alert), 행정·사법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FDA는 "외국 기업은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미국 내 제조시설보다 더 심각한 결함이 자주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중소 식품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FDA 조사관 방문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영어 담당자나 품질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공정 기록, 원료 추적자료, 위생관리 문서 등을 현장에서 즉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나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단순 서류 대응 수준을 넘어 제조현장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8월 도입된 FISP(FDA ImportShield Program) 역시 미국 수입통관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FDA는 지난해 8월 4일 공개한 'Entry Review' 안내문에서 FISP가 전국 단위 중앙집중형 심사체계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각 항구별로 수입통관 건을 개별 심사했지만, FISP 도입 이후에는 위험정보를 전국 단위로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특정 항구에서 위조 의약품이나 오염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정보가 전국 항구에 즉시 전달된다. FDA는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동시 감시가 가능해졌다.

FDA에 따르면 FISP 시범사업 결과 처리 속도는 70% 빨라졌고, 고위험 제품 적발은 36% 증가했다. 특히 FDA 자동심사 시스템에서 즉시 통관되지 못한 제품은 모두 사람 중심의 Human Review 단계로 이관된다. 주요 사유는 ▲고위험 제품, ▲필수정보 누락, ▲무검사 억류(DWPE,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대상, ▲표본검사 대상 등이다.

FDA는 이어 2026년 3월 SERIO+(System for Entry Review and Import Operations) 플랫폼 전면 시행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위험 기반 분석시스템인 PREDICT(Predictive Risk-based Evaluation for Dynamic Import Compliance Targeting) 등 여러 심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검사관 정보 접근 속도와 데이터 재검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SERIO+ 시행으로 신고 데이터 불일치나 반복 위반 이력이 훨씬 빠르게 추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데이터 정합성은 기본... FDA 가이드 따라야

전문가들은 통관거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라벨링 오류인 만큼 라벨링 대응 역량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올해 1월 4일 aT센터에서 열린 '2026 K-푸드 수출 성공 전략-라벨링 하나로 수출이 막힌다' 세미나에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식품컨설팅 기업 J&B 푸드 컨설팅 이종찬 대표 또한 "미국 통관거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라벨링 위반"이라며 "현재 절반 정도가 라벨링 이슈로 억류(Detention)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으로 수출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기존 라벨이 문제없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항상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존 등과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기존 한국 제품의 라벨을 참고하는 관행도 강하게 경고했다. 또 "May contain..." 형태의 교차오염 문구 역시 FDA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FDA는 해당 문구가 기재된 제품에 대해 실제 성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검사 결과 성분이 검출될 경우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통관의 핵심이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AI 기반 라벨 검증, 중앙집중형 수입심사, 해외 제조시설 불시점검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미국 수출은 단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이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FDA의 AI 기반 심사체계 확대와 데이터 검증 강화에 따라 관세업계는 앞으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라벨 적합성, 제조시설 등록 상태, 원산지 및 성분 정보의 정합성까지 검토하는 '사전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실제 FDA는 수입신고 데이터와 라벨 정보, 제조시설 등록 정보, 원재료 정보 간 불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보 누락이나 오류가 반복될 경우 무검사 억류(DWPE)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FDA의 FISP 및 SERIO+ 체계 도입 이후에는 전국 항구 단위의 위험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 특정 항구에서 발생한 위반 이력이 미국 전역 심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AI와 데이터 기반 통관 시스템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수출은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신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베트남 통관

2025년 8월 11일 또 럽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관세·통관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KOTRA 무역관, 이여람 관세사에게 베트남의 강화된 통상 규제에 관한 실무적 조언을 들었다.

13년 만의 미 PFC 지정으로 특별단속 베트남 지식재산권 통관 강화 '부품·리벨'로 확대



이 여 랴 |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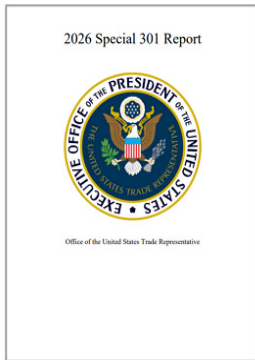
지난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26 스페셜 301 보고서(2026 Special 301 Report)'¹⁾를 통해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경고 수준을 넘어,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 및 추가 무역조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베트남이 해당 등급에 지정된 것은 13년 만이라는 점²⁾에서 국제사회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호가 미흡하다"는 선언적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불법복제, 위조상품 유통, 상표권 침해, 전자상거래 기반 위조물품 거래 등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필요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및 추가 관세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세관 당국의 최근 대응 동향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IP) 보호·집행 현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다.

2) "In this year's Special 301 Report, USTR identifies Vietnam 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PFC), marking the first time in thirteen years that a country is listed in that category(2026 Special 301 Report, 2026.4.30.)". 우선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THE 2026 SPECIAL 301 LIST ●



Priority Foreign Country	Priority Watch List	Watch List	
• Vietnam	• Chile • China • India • Indonesia • Russia • Venezuela	• Algeria • Argentina • Barbados • Belarus • Bolivia • Brazil • Canada • Colombia • Ecuador • Egypt	• European Union • Guatemala • Mexico • Pakistan • Paraguay • Peru • Thailand • Trinidad and Tobago • Türkiye

베트남은 유일하게 'PFC'로 지정됐으며, 중국·인도·러시아 등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됐다.

2. 지식재산권 이슈의 통관 리스크 확대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라기보다 글로벌 통상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연결돼 있다. 미국 등 주요 수입국은 위조상품 유통, 우회수출 및 원산지 세탁 가능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경유하거나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증 및 관리 수준 또한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베트남정부 역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세관 단계에서의 지재권 집행 및 통관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관련 이슈는 통관 지연, 화물 보류, 폐기, 행정처벌 및 브랜드 리스크로 이어지는 무역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베트남 세관은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에 통관보류, 위조상품 압수 및 폐기, 권리자 등록 기반 감시제도 운영, 국경단계 검사 강화,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관리 및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반 선별검사 등을 통해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3. 베트남정부, 지재권 특별단속 및 국경 집행 강화

미국의 PFC 지정 직후, 베트남정부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에 착수했다. 베트남은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 단위의 지재권 침해 특별단속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상표권 침해·온라인 불법복제·산업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³⁾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조치가 단순 시장 단속에 그치지 않고, 세관 당국까지 포함한 국경단계 집행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정부는 관계기관⁴⁾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시했다.

- 지재권 침해 적발건수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 위조상품 적발 강화
- 국경·항만단계 검사 확대
- 통관보류 및 선별검사 강화
- 전자상거래 기반 위조물품 집중 단속

이는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 통관 현장에서의 검사 강화 및 세관 집행 확대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베트남 국영 매체⁵⁾는 세관 당국이 국경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침해 의심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통관절차를 중단(proactively suspend customs clearance)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 단속 조치라기보다 세관 집행체계 전반의 구조적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베트남은 미국의 PFC 지정 이전부터 세관 단계에서 지재권 집행체계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3월 시행된 ‘Circular 06/2026/TT-BTC’는 세관 지재권 기록 관리의 디지털화, 현장 세관 권한 확대,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IP 집행 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세관이 통관보류 결정 이후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되면서, 향후 국경 단계에서의 지재권 집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다. 과거에는 권리자 신고 중심의 수동적 집행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세관이 직권(ex officio)으로 위법화물을 선별·정지시키는 방향으로 집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Official Dispatch No. 38/CP-TTg(2026.5.5.)

4) 세관(Customs), 시장관리국(DMS),公安部 경제경찰,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지식재산청(NOIP), 산업무역부(MOIT) 및 지방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s) 등으로 구성

5) VOV World, "Vietnam launches nationwide crackdown on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7 May 2026, customs authorities will strengthen inspections of cross-border imports and exports; proactively suspe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when there is clear evidence of IP infringement.

4. 통관 현장에서 나타난 주요 지재권 리스크 사례

1) 위조상품 및 IP 침해 급증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는 위조상품 및 지재권 침해 관련 단속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 매체⁶⁾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위조상품 및 지재권 침해 관련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6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수 및 불법유통 적발 역시 2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정부가 위조상품 유통, 우회수출 및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속 강화 흐름은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주문자위탁생산(OEM)이나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의 생산 과정에서 상표권 귀속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거나, 부품의 출처 및 라이선스 관리가 미흡한 경우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단순 완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재, 라벨, 부품 단계까지 세관의 지재권 검토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사전 점검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권리 등록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완비 수준에 따라 통관 지연 또는 보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확대와 위험관리 기반 통관체계 강화에 따라, 기존에는 일반 통관 절차로 처리되던 소액·다빈도 화물 및 특송 물량에 대해서도 지재권 검토 및 선별검사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상표권 표시(®) 관련 통관 리스크

최근 베트남 세관은 지재권 표시와 관련해 실제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베트남 세관은 2026년 공식문서 '15662/CHQ-GSQL'을 통해, 제품 라벨에 사용되는 '®' 표시와 산업재산권 보호표시에 관한 해석기준을 안내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베트남의 지재권 관리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세관은 관련 법령⁷⁾에 근거해, 베트남에서 실제로 보호받지 않는 상표에 대해 '®'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허위 또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산권 표시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또는 제3국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베트남 현지에서 상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포장재 및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 Vietnam News Agency(VNA), "Crackdown on smuggling, counterfeit goods intensified," 2026, reporting that counterfeit goods and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rose over 167per cent and smuggled goods cases surged by over 208per cent.

7) Circular No. 11/2015/TT-BKHCN, as amended by Circular No. 06/2024/TT-BKHCN

또한 베트남 세관은 산업재산권 보호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라벨 수정·보완 명령, 위반 표시 제거, 물품 압수 또는 폐기 등의 행정처분⁸⁾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단순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허위 보호 표시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시, 부적절한 ® 사용, 라벨 기재 오류 등까지 행정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시사점

앞서 살펴본 규제 흐름은 베트남이 최근 미국 USTR의 PFC 지정 이후 통상 압박 및 추가 무역조치 가능성에 대응해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도 이어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세관 단계에서의 라벨 검토 및 지재권 기반 통관 심사는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베트남 상표 등록 여부와 실제 제품 라벨 간의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 표시의 사용 적정성, 보충라벨의 번역 및 기재 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OEM 제품의 권리관계 및 라이선스 구조가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관리 포인트가 된다. 다만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 또는 제3국 등록을 기준으로 포장재 및 라벨을 설계하는 사례가 많아, 베트남 현지 등록 여부와의 불일치로 인해 통관 단계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Decree No. 99/2013/ND-CP, as amended by Decree No. 126/2021/ND-CP and Decree No. 46/2024/ND-CP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
질문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대해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 특례기준으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완제품 가격(또는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협정상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완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역외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답변	※ 주의사항 ① 한·미 FTA의 경우 최소허용수준 적용이 배제되는 품목(협정 부속서 6-나)이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적용 시 유의해야 한다. ② EFTA·EU·튀르키예·영국과의 협정은 최소허용수준을 최종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 변경기준인 경우로 한정하지 않으며,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FTA 원산지 판정 및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1) 개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다는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를 작성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한다. FTA 실무상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때 대부분 물품은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일부 원재료의 HS Code 미변경 등의 사유로 원산지 판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FTA 원산지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소허용기준을 해석할 때도 협정별로 해석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질문 및 답변 사례를 기반으로 각 협정별 최소허용기준의 개념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최소허용기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미소기준)은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아주 미미해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결국 최소허용기준은 사용돼서는 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무시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데,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증명 대상물품인 완제품의 제품가격(또는 중량)에서 차지하는 가격(또는 중량) 비중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완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이 없으면, 비원산지 재료가 단 0.1% 사용돼도 완제품과 그 세번이 다르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이 됐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최소허용기준은 FTA로 인한 특혜 대상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확인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협정은 최소허용기준에 관한 규정을 협정문에 두고 있으며 가격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한 특정한 비율(허용 비율)을 정하고 있다.

최소허용기준은 원산지 판정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특례기준이지만, 협정별 또는 품목별 적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가격 기준이 적용되나 섬유류의 경우 중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이 분류되는 제1~24류(제1~4부) 제품들은 일정 요건하에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이 있는 만큼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해당 질문 사례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질문 자체는 짧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앞서 언급한대로 최소허용기준은 원산지 판정이 이뤄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전제사항이다. 그렇다면 제시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원산지 판정 대상물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쟁점(HS Code), 그리고 그와 관련된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등)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관세청의 답변을 확인하고 관련된 해석과 사례를 안내하겠다.

2) 관세청 답변

관세청은 최소허용기준이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 특례기준으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완제품 가격(또는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협정상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완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 특례기준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만 활용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 일부 협정에서는 완전생산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에서 최소허용기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는 한·ASEAN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0조(최소허용수준)에서 ①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②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의 답변 중 주의사항에서도 언급됐듯이 EFTA·EU·튀르키예·영국과의 FTA 협정은 최소허용수준을 최종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2항에서는 ①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표현처럼 특정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만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② 부가가치기준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한·EU FTA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든 상관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한·EU FTA 질문 사례로 제7009.92호(틀이 붙어 있는 거울)에 해당하는 물품 생산 시 원산지 결정기준(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석상 제7001호의 원재료 외 다른 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한·EU FTA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는 비원산지 재료라도 제품 공장도 가격의 10% 이내에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7001호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 사용 시에는 제품 공장도 가격의 10% 이내에서 사용이 인정된다”는 답변이 제공됐다.

또한 최소허용기준의 적용기준(가격 또는 중량)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최소허용기준 적용 시 가격 기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섬유류의 경우 중량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협정에서 섬유류(대부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을 중량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어느 협정과 달리 섬유 관련 제품(섬유 및 의류)은 제4장(섬유)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최소허용수준과는 다른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제4장 섬유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제7항(최소허용수준)에서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섬유원료 또는 원사 이외의 재료는 포함되지 않기에 비원산지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섬유원료 또는 원사) 총중량에 7퍼센트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이때, 총중량의 기준을 ‘섬유 또는 의류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로 오인해, 최소허용수준 계산 오류로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님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류 등이 분류되는 제1류부터 제24류에는 최소허용기준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거나 조건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이스라엘 FTA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의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허용수준이 적용되지 않고,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는 6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진 비원산지 재료인 경우만 최소허용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효된 한·UAE CEPA의 경우 해당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농축수산물 및 식품류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허용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협정별로 그 적용 범위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류의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적용 협정의 최소허용기준 활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협정의 최소허용기준 허용치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의 경우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가격의 10%까지 최소허용기준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정에서 정하는 FOB 가격 및 비원산지 재료비의 산출방법을 확인해 10% 이내에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완제품 및 원재료 가격은 무역거래상황, 물가상승(하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해 버퍼율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버퍼율이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부가가치기준 또는 최소허용기준 등의 적용 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FTA-PASS’와 같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때 안정적인 원산지 판정 비율 관리를 위해 사용자가 부가가치기준 또는 최소허용기준에 대한 버퍼를 설정할 수 있다.

● 버퍼율 적용 예시 ●

협정	HS Code	최소허용기준 비율	버퍼율 설정	시스템상 최소허용기준 비율
한·ASEAN FTA	제8422.40호	FOB 가격의 10%	3%	FOB 가격의 7%

답변을 확인하면 관세청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역외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제5401.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인데, 여기에 서의 제외세번에 대해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에 관세청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하나, 한·미 FTA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다만, 모든 제외세번이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에서는 제2103.90-9090호 ‘기타’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단서규정으로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한·ASEAN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최소허용수준은 세번변경기준에 한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3.90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은 각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별 해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미 FTA의 경우 최소허용수준 적용이 배제되는 품목(협정 부속서 6-나)이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적용 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연관된 사례로 제2103.2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02.90호의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2002.90호에 대한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농수산물(제1류~제24류)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해당 물품과 6단위 세번이 다른 경우에만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제2103.20호(토마토케첩)의 생산에 6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 재료(제2002.90호, 토마토 반죽)가 사용된 경우 품목별 기준에 명시하지 않아도 최소허용기준은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원산지 재료인 제2002.90호(토마토 반죽)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것은 최소허용기준을 배제하기 위함이며, 부속서 6-나의 최소허용기준 적용 제외 품목과 함께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된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농수산물의 최소허용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103.20호의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인 제2002.90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서로 6단위 세번이 다르더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은 불충족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다른 한·미 FTA 사례로 제2009.3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인데, 관세청에서는 “해당 세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20류 및 제0805호의 원재료는 역내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한·미 FTA 협정의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예외 규정(부속서 6-나 바항)에 따라 제0805호 또는 제20류 원재료는 소량이라도 사용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안내했다.

최소허용기준은 FTA 원산지 판정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특례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세번 변경기준 적용 시 활용된다. 다만, 협정별로 최소허용기준에 대한 적용 범위와 유의사항들이 많으며, 실제 원산지 판정 시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 원산지 관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요건 / 냉동 주꾸미의 수입요건

냉동 상태로 수입되는 주꾸미의 수입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HS Code 제0307.52-3000호에 분류되는 냉동한 주꾸미를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사 / 면세 범위 이하 해외 직구 물품의 분할 배송

**해외 직접 구매(직구) 시 자가사용 면세범위 이하 금액으로
2회에 걸쳐 분할 배송받는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관세 등 수입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면세범위 이하로 분할해 배송하는 것은 「관세법」상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 반입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부정감면죄, 관세포탈죄 등)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 지방산 에스테르의 HS Code

식품제조 시 유화제 용도인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의 품목분류가 궁금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문의하신 물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합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의 '기타'의 '기타'에 해당한다면 제3824.99-909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원하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유사한 품목분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정 세번	제3824.99-9090호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SUCROSE FATTY ACID ESTER; SE90; PR.CHNA
물품 설명	Sucrose fatty acids esters로 Mono-, Di-, Tri- 등으로 조성된 미백색계 분말상의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
용도	식품첨가물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합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합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Sucrose fatty acids esters로 Mono-, Di-, Tri- 등으로 조성된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FTA / 수입대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수입대행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수하인(Consignee)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작성방법에서 제3란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하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중략> ...

3. 제3란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 수입계약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해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시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계약으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입자와 다른 경우

→ 수입신고 시 당사자 간의 양수도계약서를 첨부

피부관리 시술에 사용되는 MTS 머신의 품목분류 -2026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심 난 섭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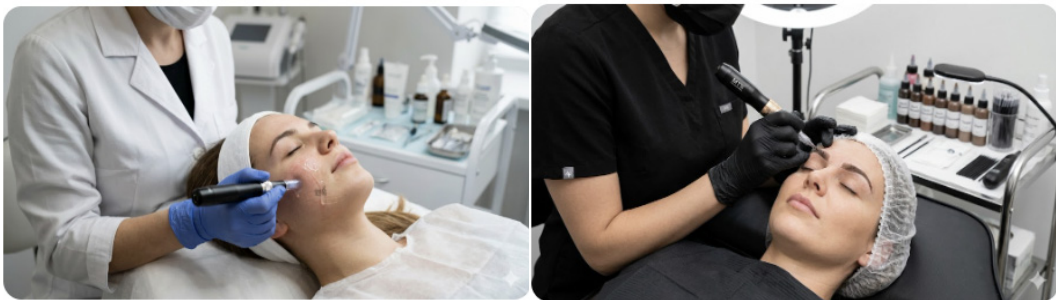
I. 개요

2026년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뷰티 시장에서 뜨겁게 떠오르는 용어는 ‘K-뷰티’와 ‘슬로우 에이징’이 아닐까 싶다. K-뷰티 산업은 말 그대로 활황이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K-뷰티를 확산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점점 구분점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미용의료기기’라는 용어가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가정용 홈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소비자의 고성능 요구에 따라 가정용 홈케어 미용기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미용기기와 의료기기 간의 구분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으며,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계속 성장세에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용기기인가? 아니면 의료기기인가?”라는 쟁점을 가진 기기의 품목분류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최근에는 반영구 화장이 대중화되고 눈썹, 입술 등의 반영구 화장(문신)뿐만 아니라 탈모 인구 증가로 두피 미세 색소요법(SMP, Scalp Micro Pigmentation)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Machine(머신)¹⁾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MTS 머신(핸드피스)은 사용되는 바늘(니들)의 종류와 침투 깊이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1)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미세침 치료): 미세한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 약물 침투를 증가시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시술(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쓰인다.

미세한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 약물, 색소, 화장품 등 침투를 증가시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피부 재생에 사용되기도 하며, 눈썹, 입술 등의 반영구 화장(문신)에도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최근 쟁점이 됐던 MTS MACHINE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겠다.

II. 쟁점 사례

1. 쟁점물품: MTS MACHINE; MAST(WQ006)

1) 개요

내장된 전동 모터가 바늘(탈착형)을 상하 왕복시켜 피부에 미세한 천공을 형성하는 펜 형상의 기기로, 피부 표피 및 진피 상층부에 미세한 구멍을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화장(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및 약물 등의 흡수를 돕는 피부관리(MTS) 시술에 사용

2) 물품 이미지 및 기능



핸드피스 내부 모터의 회전운동이 직선 왕복운동으로 바뀌어 장착된 카트리지를 통해 피부에 미세 흡을 낸 후 ① 색소를 피부에 주입해 표시(문신), ② 약물 또는 피부개선 성분(ample, serum 등)의 흡수를 유도, ③ 고무 카트리지를 부착해 화장액의 피부 흡수를 돕는 홈케어 기능

● 카트리지 종류 참고 ●



카트리지는 제시되지 않음.

2. 쟁점사항

본 물품의 쟁점사항은 피부에 미세 holes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기능과 약물 또는 세럼 등의 흡수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핸드피스를

- (갑론) 고유기능을 가진 ‘가정형 미용기기’로 봐 제8543.70-2020호로 분류할지
- (을론) ‘기타 피부과용 기기’로 봐 제9018.90-8190호로 분류할지
- (병론) ‘기타 기기’로 봐 제9018.90-8900로 분류할 것인지다.

3. 품목분류위원회 논의 사항

1) 갑론: 제8543.70-2020호에 분류

본 물품은 핸드피스에 색소주입용 카트리지(미세침)를 장착해 피부에 미세 holes 내고 피부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해 입술, 눈썹 등에 표시하는 기능(문신)과,

약물 흡수용 카트리지(미세침)를 장착해 피부를 자극하고 약물이나 피부개선 성분(ample, serum 등)의 흡수를 유도하는 기능 및 고무 카트리지를 부착해 화장액의 피부 흡수를 돕는 흡케어 기능을 수행하는 핸드피스로 화장품의 흡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수입했으므로

가정형의 미용기기로 봐 제8543.70-2020호로 분류해야 함.

2) 을론: 제9018.90-8190호에 분류

본 물품은 피부에 미세 holes 내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거나, 약물이나 피부개선 성분(ample, serum 등)의 흡수를 도와주는 물품으로

「의료기기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서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개인용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자극기’를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A63030.03 개인용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자극기 [2] Stimulator, skin, medicine absorption, home use 피부를 자극하여 의약품 등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바늘(길이가 0.25mm 이하인 것에 한함)이 달린 롤러 등의 기구

A64040.02 의료용 체내 표시기 [2] Marker, surgical, internal 인체 내부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인체 삽입형, 체내 투여형 및 문신기 등

본 물품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카트리지에 따라 문신, 약물 흡수 유도 피부자극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며, 인터넷 등의 자료를 보면 피부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봐야 함.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피부과용 기기’로 봐 제9018.90-8190호에 분류함.

3) 병론: 제9018.90-8900호에 분류

본 물품은 피부에 미세 흡을 내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거나, 약물이나 피부개선 성분(ample, serum 등)의 흡수를 도와주는 물품으로

「의료기기법」에 의해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개인용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자극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상 유사한 물품으로 의료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부용 목적 이외의 일반 의료기기(방사선 조사 지점, 수술 절개선 마킹, 바늘 위치 마킹 등)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의료기기임.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의료기기’로 봐 제9018.90-8900호에 분류함.

4.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을론) 제9018.90-8190호에 분류

III.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해설 및 시사점

‘MTS MACHINE; MAST’는 MACHINE(핸드피스) 자체만 제시됐음. 본 물품은 니들의 종류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HS를 찾아본다면 미용기기로 봐 제8543호의 기능으로 볼 것인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를 우선 검토해 제9018호의 물품으로 볼 것인지다.

제9018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9018호 해설서

90.18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 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 심전계

9018.12 -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3 -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4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9018.19 - 기타

9018.2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놀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9018.32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9018.39 - 기타

-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018.49 - 기타

9018.5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9018.90 - 그 밖의 기기

9018	90	1000	임신진단기	Pregnancy diagnostic apparatus	8%	C 8% E1 5.6%
9018	90	20	외과수술용 기기	Surgical operation instruments		
9018	90	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Laser operated instrument	8%	C 8%
9018	90	2090	기타	Other	8%	C 8%
9018	90	3000	산부인과용 기기	Gynaecological or obstetrical instruments	8%	C 8% E1 5.6%
9018	90	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Endoscopes (gastrosopes, peritoneoscopes, cystoscopes and the like)	8%	C 8%

9018	90	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Artificial kidney apparatus, including dialyzers for artificial kidney apparatus	8%	C 8%
9018	90	6000	경피전기신경자극기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8%	C 0%
9018	90	7000	수의과용 기기	Veterinary instrument and appliances	8%	C 8%
9018	90	8	기타	Other		
9018	90	81	피부과용 기기	Of dermatologic uses		
9018	90	81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Laser operated instrument	8%	C 8%
9018	90	8190	기타	Other	8%	C 8%
9018	90	8900	기타	Other	8%	C 8%
9018	90	9000	부분품과 부속품	Parts and accessories	8%	C 8%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각종 침류(needles)들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다.

본 물품은 피부에 미세 흡을 내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거나, 약물이나 피부개선 성분(ample, serum 등)의 흡수를 도와주는 물품이며, 제9018호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기법」에 의한 식품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의료용 체내표시기’, ‘개인용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자극기’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피부과용 기기’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81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013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물품의 경우 병원, 피부관리숍 등에서 영구화장 시술 또는 약물 흡수 유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제9018.90호에 분류됐고, 2017년 ‘톡스틱(TOK STICK)’ 처럼 피부에 미세 흡을 내어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로 분류된 바 있다.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05	검토서 번호	0072013001275
시행일자	2013년 4월 2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 세번	제9018.90-9080호(제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경합 세번	제8467.29-0000호		
	제8543.70-9090호		
	제9018.90-9080호		
품명	Beauty Appliance; Digital Pro;;; 한국산		
물품 설명	○ 개요 - 핸드피스, 메인컨트롤러, 풋스위치 등으로 구성된 미용기기로 피부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거나, 피부를 자극해 약물 흡수를 유도하는 기기 ○ 구성요소별 기능 - 핸드피스: 핸드피스 내부에 모터를 내장, 모터의 회전운동을 기어 등을 이용해 분당 4,000~5,000회의 직선왕복운동으로 바꾸며, ① 핸드피스에 색소주입용 카트리지를 장착해 흡입된 색소를 피부표피층에 주입해 입술, 눈썹 등의 표시를 하거나, ② 약물 흡수용 카트리지를 장착해 피부를 자극해 피부개선성분(ample, serum 등)의 약물 흡수를 유도 ※ 핸드피스에 장착되는 카트리지(바늘)는 제시되지 않음. - 메인컨트롤러: 핸드피스의 운동속도를 1단계(4,400rpm)부터 10단계(5,700rpm)로 조절하며, 핸드피스, 풋스위치 등에 전원을 공급 - 풋스위치: 핸드피스의 동작을 메인컨트롤러를 통해 제어(풋스위치를 누르면 핸드피스 작동, 떼면 작동을 멈춤) - Adapter: 교류 220v 전기를 직류 5v로 변환해 메인컨트롤러에 공급		
	○ 용도: 병원, 피부관리숍 등에서 영구화장 시술 또는 약물흡수 유도용으로 사용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학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 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사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아래 (II) 참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 “또한 많은 의료용 기기(인간 및 수의학)는 실제로 있어 공구(예: 해머·망치·톱·끌·정·검자 또는 집게·압설자 등) 또는 칼붙이(가위·나이프·절단기 등)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물품은 … <중략> … 명백히 치료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용 체내표시기(문신기)’ 또는 ‘약물흡수유도 피부자극기’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돼 있는 물품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18호의 범주와 유사한 바, 본 건 물품은 제9018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제90류 주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347	검토서번호	0072017004747
시행일자	2017년 7월 28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9018.90-9080호		
품명	Other appliances used in medical; TOK STICK(BEUON-01)		
	○ 개요 0.5mm 길이의 니들(needle) 49개가 장착된 니들헤드, 하단 보틀과 뚜껑으로 구성된 1회용 피부 자극기로서, 피부에 미세 흡을 내어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물품(길이 9cm) - 기존 MTS* 시술 기기와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휴대 및 셀프시술도 가능하도록 제작 *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미세침 치료): 미세한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 약물 침투를 증가시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시술(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물품 설명	○ 구성요소 재질 및 기능 - 하단 보틀(3ml): 용액(앰플 등)을 투입해 니들로 전달되도록 함(플라스틱). - 니들: 두께 0.18mm, 길이 0.5mm(스테인레스 재질에 순금 도금) - 캡: 니들헤드를 보호(플라스틱) ○ 사용 방법 - 하단 보틀에 약물(용액)을 투입해 니들헤드와 결합시키고 사용자 선택에 따라 손으로 얼굴에 톡톡 두드리거나 꾹꾹 눌러 사용 * 3ml 용액을 전부 피부에 사용하는 데 15분 정도 소요됨.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의료용 기기 및 외과용 기기에 '각종 침류(needles)'를 예시하면서, "많은 의료용 기기(인간이나 수의용)는 실제로 있어 공구(예: 해머·망치·톱·끌·정·검자 또는 집게·압설자 등)나 칼붙이(가위·나이프·절단기 등)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에 미세 흡을 내어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기타의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관련 이미지



IV. 시사점

이번 품목분류 결정사항은 ‘홈뷰티 디바이스’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기로 분류돼야 하는지, 미용기기로 분류돼 「전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의료기기법」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와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의료기기인지 일반 공산품인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출입할 때는 물품의 사용 목적, 기능을 판단하고,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물품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실리카 마이크로스피어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고체 형태의 구형 실리카

이산화규소(SiO_2)는 산소 원자 2개와 규소 원자 1개가 결합한 화학물질로 ‘실리카’라고도 한다. 모래와 유리의 주성분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체 물질 중 하나다.

실리카는 현대 산업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감초’ 같은 존재다. 형태와 가공 방식에 따라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한데 주요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봉지재(EMC): 반도체 칩을 습기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싸는 패키징 재료인 봉지재 성분으로 구형 실리카가 대량 들어간다. 칩이 열을 받아 팽창하는 것을 막고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섬유: 우리가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핵심인 광섬유의 주성분이 바로 고순도 실리카다. 빛 손실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최적의 재료다.

2. 화장품과 치약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나 파우더에 들어가는 미세한 구형 실리카는 빛을 난반사시켜 피부 결점을 가려주고 땀과 유분을 흡수해 뽀송한 느낌을 유지해 준다.

치약: 치석을 제거하는 연마제 역할을 한다. 입자 크기를 조절해 치아 손상은 줄이면서 세정력을 높인다.

3. 식품과 의약품

식품첨가물: 가루 형태의 식품이 습기에 뭉치지 않도록 고결방지제로 사용된다.

의약품: 알약을 만들 때 성분들이 잘 섞이고 형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부형제로 사용된다.

실리카는 그 용도에 따라 각진 형태, 구형 등 여러 형태로 사용되며, 특히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카는 구형 실리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리카는 제조 방법, 형태 등에 따라 제2811호, 제3207호, 제7018호 등 여러 세번으로 나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백색의 미세 분말상으로 ‘기타 이산화규소’에 해당하는 제2811.22-9090호로 신고했다.

실리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련된 HS Code는 다음과 같다.

품목번호	품명	기본 세율	탄력 양허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2	이산화규소	8	C 5.5%
10 00	화이트카본	8	C 5.5%
90	기타		
10	실리카겔	8	C 5.5%
90	기타	8	C 5.5%
3207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 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0 00 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C 6.5%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20 00 00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8	C 16%

쟁점이 된 물품은 **용융한 구형 실리카**로서, 제28류 주 제3호 라목 제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라. 제3206호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제3207호의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알갱이,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한정한다]**”

본 물품은 용융한 실리카로서 용융과정을 거쳤으므로 ‘유리’에 해당하며, 분말 형상이므로 제2811호에서 제외된다.

제3207호는 ‘… <전략>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5)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가루 상태·알갱이 상태·플레이크(flake) 상태**의 여러 가지 유리 [법랑·용융(鎔融: fused)된 석영·**그 밖의 용융(鎔融: fused)된 실리카(silica)로 만든 유리를** 함유하며, 착색이나 은백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중략> … 위 (5)항의 물품이 가루 상태·알갱이 상태·플레이크(flake) 상태 이외의 **다른 모양일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보통 제70류에 분류한다**. 법랑과 에나멜 유리의 덩어리(제7001호)·에나멜 유리의 판·막대(stick)·관(제7002호)·영화용 스크린·도로 표지용을 도포하는 데 사용하는 **구(球)형의 소립자(제7018호)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구형의 소립자 형태인 실리카의 경우 제3207호에 해당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관세율표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8.20호에서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를 세분류하고 있다.

제70류 주 제5호에서는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7018호 해설서 제(H)항에는 “**지름이 1mm를 초과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glass microsphere)**: 이들은 도로표지용 패널(panel)·반사표지나 영화스크린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거나 비행기 제트 엔진이나 금속 표면의 클리닝(cleaning)에 사용한다. 이들은 횡단면이 중공(中空)이 아닌 완전한 구(球) 모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직경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용융실리카의 마이크로스피어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8.20-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THER SILICON DIOXIDE	2811.22-9090 (FRCJP1 2.8%)	Glass microspheres not exceeding 1mm in diameter	7018.20-0000 (FRCJP1 4%)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등 신규 수록
-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한금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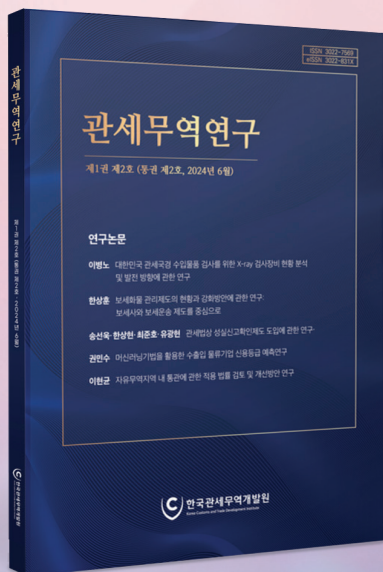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후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